



윤 영 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 산림경영계획인가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 법제처의 새로운 유권해석 도출

금년 초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을 통보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세무 관장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7월과 8월에도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시업중인 임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의 2003년도 행정심판 결과(행정자치부 행심 제2003-165호, 2003. 7. 28.)에 의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동행정심판 사례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발간한 2008년 신간 “지방세실무” 책자에 수록되어 자

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지침서로 활용한다는 문제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산림청에서는 새로운 감면대상 세제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감면대상으로 확정된 세제를 제대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인용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한 해석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 하며, 지방세법의 적용에 산림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도 산림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산림청에서도 법제처를 방문하여 임업인의 입장과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인가, 시업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 결과 법제처에서는 2008.10.29. 제37회 법령심의회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고 해당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을 확정하였는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쟁점사항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산림경영계획상 해당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신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함. (법제처 법령총괄과 2008.10.29)

이상과 같은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관서에 통보하였다.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 임업인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개선내용을 알려드렸다. 이와 함께 “지방세실무” 책자를 편집·발간하는 한국지방세연구회에도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하고 개정판에 반영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

평소 산림관련 세제업무는 산림청에서 관련 법령을 직접 관장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소홀하기 쉬운 분야이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산림청을 믿고 세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산림청 담당부서와 상의를 하였으며, 산림청 담당부서에서도 근본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보전산지임에도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협조로 기존 행정심판 판례와 달리 진일보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었다는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산림청은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산림**